

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11월 27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7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최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 침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바,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(안 제1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조례안은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 하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의원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
2)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-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(안 제2조 및 제3조)
-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- 5년마다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근거를 규정함
-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(안 제6조 및 제7조)
 -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,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다. 검토의견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4항에서는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 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.

○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 및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,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